

다쏘시스템

업무수행 강령

2007. 9. 4

목 차

준법감시	4
다쏘 그룹과 사업생태계 간의 상호작용	
상호 존중	4
고객과 제휴자에 대한 존중	4
경쟁자에 대한 존중	4
감독기관에 대한 존중	4
환경에 대한 존중	4
회사 재산의 보호	
지적재산	5
기밀정보 및 독점정보	5
전자 매체	6
사업 수행	
이해 상충	7
내부자 거래	7
회계장부 유지 및 보고	8
내부고발	9

소개

다쏘시스템과 그 자회사(이하 '다쏘그룹이라 칭함')는 최고수준의 사업수행에 전념한다. 제품수명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분야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건전한 사업수행은 창사이래로 다쏘그룹의 정신의 요체가 되어왔다.

우리의 뿌리 깊은 가치관과 사업수행은, 개인으로서 및 회사로서 현재의 우리를 정의한다. 강력한 사업이행은 직원, 고객, 제휴자, 공급자, 동료, 감독기관 및 경쟁자 간의 상호작용 기반을 형성한다., 신뢰와 오랜 관계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직, 공정한 행위, 인간 존중 및 타협 없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축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다문화조직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활용하는 한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고수한다

본 업무수행강령은 다쏘그룹과 직원이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명시한다. 본 강령은 우리가 전문적인 결정과 다쏘그룹 활동의 범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지침서이자 원천이다

본 개요는 다쏘그룹이 건전한 사업윤리를 준수 및 이행하기위한 모든 경우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개요는 우리 각각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본 기본 원칙을 준수할 때 상호 신뢰와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며,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으로서의 전세계적인 명성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본 강령은 각 다쏘그룹회사의 내부정책매뉴얼로 보충되며, 여기에는 개인적 권리와 고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이 실려있다.

본 강령은 기능이나 직위에 관계 없이 다쏘그룹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준법감시

다쏘그룹은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서약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직원이 다쏘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요구되는 법, 규정 등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직원들은 유엔의 보편적 인간의 기본권 및 국제노동기구의 다양한 근본적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국제적 표준사항들을 준수한다.

이 강령에 규정된 윤리규정 및 직업적 수행지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법, 규정, 의무, 주요 원칙을 대체한다기 보다는 보완하는 사항들이다. 만약 모순된 사항들이 있다면 각 나라의 규정이 이 강령의 지침보다 우선한다.

다쏘그룹과 사업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우리의 동료, 고객, 제휴자, 경쟁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 다쏘직원은 다쏘의 최고 가치를 대표하며 우리 조직의 풍요를 창조한다. 전세계적인 팀으로 성공하기 위해, 모두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성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기본적으로 믿는다. 우리의 팀은 협력적 작업, 기능 개발, 지식 공유 및 상호간 학습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우리는 모든 문화의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이러한 풍요함을 활용한다. 개인의 기여를 인식하고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의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사업의 지속성을 확실하게 한다

우리의 제반 사업 협력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호이익관계를 기초로 확립된다.

상호 존중

우리 회사의 문화는 상호 존중, 공정성, 그리고 우리 종업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고용, 훈련, 승진, 임명 및 여타 고용에 관한 사항은 자격, 재능, 성취 및 여타 사업 동기를 기초로 결정한다. 우리는 직원/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정보를 보호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있는 국가의 지역 및 국가 고용법을 준수한다.

우리는 차별, 괴롭힘 및 어떤 성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한다. 다쏘그룹은 성, 외형 (예, 피부색), 인종, 종교, 연령, 성적 기원, 국적, 정당 또는 노조가입 및 여타 특성에 기초한 괴롭힘과 차별을 엄격히 금한다.

안전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이 작업수행의 필수요건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전 및 근무 중 작위 또는 부작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다쏘그룹은 보건과 안전에 관한 현행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 부상, 불안정한 장비, 폭력 또는 안전에 우려되는 징후에 대해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인다.

다쏘의 존중

외부 행사, 회의 및 협의등에 참가할 경우, 우리가 회사를 대표하고 다쏘의 명성에 우리 모두가 기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회사, 가치관, 팀, 경영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어떠한 직업적인 상황에서도 성실과 전문성을 갖고 행동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고객과 제휴사의 존중

우리의 고객, 공급자 및 제휴사와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계는 모든 다쏘직원들의 지속적인 정직과 성실함에 기초를 둔다. 우리는 하이테크 산업내의 최상의 방법론에 따라 그리고, 다쏘그룹, 제휴자 및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의 고객 및 제휴자와의 의사교환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고객의 사적자유를 존중하고 다쏘그룹 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의를 가지고 고객 정보를 취급한다.

경쟁자의 존중

다쏘그룹은 다쏘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국제적인 사업윤리기준을 지지하며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경쟁한다. 우리는 대중매체, 공식 서류, 무역전시회, 산업 조사, 유능한 자문역 및 고객과의 적적할 상호 교류를 통해서 경쟁관련 정보를 적절히 입수한다.

감독기관의 존중

두개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전 세계에 사업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그룹으로서, 다쓰그룹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조직과 교류한다. 재무보고에 관한 한, 우리는 주주, 고객, 제휴사 및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부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함을 보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보고가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히 적시에 이루어지며,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 방침 및 절차를 항상시킨다. 조사와 감사의 경우, 우리는 질의에 공개적으로 응답하고 감독대표자와 직접적으로 정직하게 논의한다

환경의 존중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다쓰그룹 미션의 중심이다. 환경의 중심축은 생태 디자인의 강조이며, 이는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제품을 창조하고 자연재료와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다쓰그룹은 자연환경에 대한 활동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추구한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현행법을 준수한다.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단체의 시설과 경영에서 환경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갖도록 한다. 우리 각자의 주요 역할은 직장에서의 일상업무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 다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회사 재산의 보호

재산이 유형이든 무형이든지 간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이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업목적을 위해 다쓰그룹의 재산을 이용할 수 없다.

재산은 하기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지적 재산 (프로그램 및 코드 포함)
- 아래 정의된 기밀 및 독점 정보
- 직원 자료
- 제품. 즉, 내부이용 또는 고객이나 제휴자에게 전달되어질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 컴퓨터
- 고객 또는 제휴자 리스트 및 정보
- 장비

지적 재산

지적 재산이란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상표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 법률 및 조약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보호될 수 있는 인간 사교의 산물이다. 다쓰그룹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코드, 소프트웨어 또는 서류와 같은 타인 소유의 지적재산은 오직 적절한 라이선싱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것이다.

지적 재산은 다쓰그룹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다쓰그룹의 사업, 성공 및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적재산의 예는 하기 사항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발명품
- 특허
- 혁신
- 방법과 과정 같은 노하우
- 디자인 및 모델
- 문서, 시방서, 사전 디자인 도구에 포함된 정보

유의 사항:

- 우리 모두는 다쓰그룹을 퇴사한 이후에라도 다쓰그룹의 지적 재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다쓰그룹의 정책을 준수하며 지적 재산 절차를 시행한다.
- 지적재산 보호의 중요 요소는 다쓰그룹의 영업비밀과 여타 독점정보에 대한 기밀유지와 제한된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 다쓰그룹의 외부에서 다쓰그룹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의 서면허가가 요구된다.

- 다쏘그룹의 법률부서는 지적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라도 제공할 수 있다.

기밀 정보 및 독점 정보

기밀 정보

기밀정보란 어느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정보나 자료이며 동 기밀정보에 대한 전달은 계약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된다. 기밀정보는 분명히 확인된 단체나 개인에게만 접근 및 공개가 가능하다. 기밀정보는 안전한 환경과 통제하에 비치되며, 공개될 수 없다.

기밀정보는 하기 사항을 포괄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다쏘그룹의 허가된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 '기밀'이라고 표시된 문서. 특히, ITAR 및 EAR 과 같은 군사서류
- 비공개 회사전략.
- 현재나 미래의 연구 및 개발 계획, 기술 타개책, 첨단 선도 기술, 발명, 계획된 M&A, 투자나 사업철수.
- 명시적으로 타인에 대한 전달이 허가되지 않은 개발 계획/모델이나 여타 정보로서 고객이나 제휴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 제휴사 또는 고객과 논의중인 내용.
- 실제 또는 예측 재무 자료
- 사적인 직원의 자료 (개인이 회사에 제출한).

독점 정보

독점정보란 어떠한 자가 (개인 또는 회사) 소유한 정보 또는 자료이며, 본 독점정보는 지적재산권 및/또는 영업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본 정보는 기밀이거나 아닐 수도 있다 (기밀이라면, 하기에 기술한 독점 정보의 사용에 관련된 지침에 덧붙여 기밀정보의 취급에 관련된 상기의 지침이 적용된다). 독점정보는 다쏘그룹의 소유이건 제 3 자의 소유이건 간에, 소유주로부터 명시적인 사용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어떤 독점정보도 동 사용허락의 엄격한 한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독점정보의 예는 하기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내부 메모, 직원에게 송부한 정보.
- 조직도.
- 팀 목표, 자료
- 시방서, 비법, 디자인, 발명.

유의 사항:

- 서류가 기밀사항으로 분류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에 '기밀'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 다쏘그룹의 사업활동에 대한 기밀정보나 독점정보를 소지하도록 위임되거나 소지하게 되는 사람은 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허락된 사업 목적에만 사용할 것
- 우리는 다쏘그룹의 활동에 관한 독점 또는 기밀정보를 다쏘그룹에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 우리는 고객 개발계획 또는 고객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같은 우리의 고객이나 제휴자에게 속한 기밀 및 독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자신의 의사표현을 참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장소(예, 비행기, 기차, 식당, 세미나)에서 다쏘그룹이나 제휴사의 독점정보나 기밀사항을 밀접한 관련자, 사업 관계자 또는 여타 제 3 자와 의논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다쏘그룹, 고객 및 제휴사의 명성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전달 매체, 기자, 상담역 및 분석자와의 의사전달은 지정된 자에 한하여 허용됨.

전자매체

다쏘그룹은 직원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전자매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매체는 독점이 아니며, 다쏘그룹의 사업상 이익을 증가시키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적(비업무목적)으로 전자매체를 가끔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업 이익에 반하여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직원의 업무수행이나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전자매체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컴퓨터
- 이메일
- 전화
- 음성 메일
- 복사기
- 팩스
- 휴대폰
- 영상 회의
- 인터넷 및 인트라넷

유의사항:

- 보안상, 우리의 패스워드가 사적인 것임을 확실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것. 패스워드는 사업상 필요할 경우에만 공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 기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존중할 것
-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속하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속한 정보를 읽거나 복사하거나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지우려 하지 말 것
- 컴퓨터나 네트워크 보안장치를 따를 것 (예: 타인의 로그인 또는 패스워드의 비승인 접속 또는 전자 파일의 모니터링)
- 다쏘그룹이나 제 3 자에 대한 민감한 성격의 어떤 자료 (기밀 또는 독점)를 전송, 보관 또는 수신하기 위해 전자매체를 사용할 때 보안 경로를 사용 할 것.

사업 수행

이해의 상충

우리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을 금하는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다쏘그룹의 이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선택, 추천, 결정, 행동해야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친척 또는 다쏘그룹의 손실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집행팀, 재무, 법률, 인사, 연구개발, 전략, 의사전달, 영업, 채널관리, 마케팅, 지원, 서비스 또는 정보기술부문의 직원들에게서 이러한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상황이 염려가 된다.

이해의 상충은 하기사항을 포괄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다쏘그룹의 이해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나 고용에 가담하는 것
- 이사회 참가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가지거나, 경쟁자, 제휴자, 고객, 공급자에서 기술고문을 하는 것
- 다쏘그룹이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회사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인사담당자는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당하다고 여겨지거나 사실을 설명할 수 있거나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부고발절차에 따라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이해상충직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나 거래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모든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고객, 제휴자, 공급자와 선물 교환, 식사 및 접대는 일반 상관습이다. 본 행위는 그 의도가 선하고 관계를 향상시킬 경우에 용납되지만, 특권을 확보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자 거래

상장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소유한 자는, 당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 동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자격이 없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 그 개인은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것이다. 내부거래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하기의 경우에 대하여 내부거래자는 책임을 진다:

- 개인이 우연히 특권적인 정보를 입수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직원이 비밀을 털어놓은 경우)
- 개인이 동 거래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
- 특권적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고, 동 제3자가 당시에 차례로 상장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거래를 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내부자 거래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 되는 정보의 예는 하기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비공개 재무제표, 배당금 및 소득 공지
- 수입 추정
- 고객 및 제휴자와 의논중인 내용
- 주요 거래: 중요한 M&A
- 주요 마케팅 변화
- 중요한 국내 또는 외국 사업투자 시도
- 우발적 손실과 경영 통계와 관련된 중요한 재무적 영향

다쏘시스템은 Eurolist (파리) 및 NASDAQ (뉴욕)에 동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내부자 지위에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 그 회사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때 다쏘 주식이나 고객, 제휴자의 유가증권을 매매하지 않는다.
-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에 동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친척, 친구, 관계자, 제휴자)에게는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회계장부 유지 및 보고

유로리스트와 나스닥 양측에 상장된 회사로서 다쏘그룹은 회계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내부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거래가 적절히 구별, 분석 및 기록됨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회계와 재무보고에 관련한 법률의 위반은 다쏘그룹과 경영진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재무보고 또는 회계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전표, 시간집계표, 청구서, 지출보고서 및 다른 종류의 재무거래에 접하게 된다. 모든 업무기록과 보고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유의사항:

- 우리의 재무 성과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진술 (어떤 이유로든지 고의로 기록을 틀리게 하거나 또는 속이는 또는 거래의 진실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시도)은 용납되지 않는다.
- 우리는 어떠한 당사자가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재무보고를 작성하는 것을 방조하지 않는다.
- 개인 (정부관리 포함), 회사 (고객, 제휴자, 공급자, 용역제공자 포함), 조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롭게 하는 뇌물, 상납 또는 유사한 지출을 위한 다쏘그룹의 자금 또는 재산의 지출 또는 사용은, 동 지출이 다쏘그룹에게 유리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된다. 우리는 정치정당, 관련된 정치 단체 또는 정치 후보자에게 어떠한 다쏘 재산에 대한 기증을 하지 않는다.
- 정당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부적절한 재무보고서 및 회계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내부고발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문적인 내부고발 절차

전문적인 내부고발 절차의 사용은 강제적이거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다.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내부고발 절차를 준수한다면, 우리는 다쏘그룹 내에서 이 업무수행 강령의 원칙들 내의 회계, 재무, 뇌물방지 분야에서 심각한 위반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한 다른 종류의 보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부고발 절차는 인식된 위반사항이 다쏘그룹의 치명적인 이해에 영향을 주거나 지적재산권의 위반, 기밀정보의 공개, 차별, 정신적 육체적 희롱과 같이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감에 영향을 줄 때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업무수행 강령에서 기술된 원칙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보고할 때는 보고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차 접촉은 인사담당임원이다
- 인사담당임원이 이해상충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나 현지의 이에 상응하는 대표에게 보고한다
- 그러나, 동 이해상충에 최고경영자나 현지의 이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개입되어있을 경우, people.ethicscommittee@ds.com 을 통해 직접 전세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위반사항 보고를 위한 상세한 절차는 인사관리부가 다쏘그룹의 각 회사에 전달하고 공표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익명의 보고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방해한다. 적절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진행되어 질 것이다.

다쏘그룹은 내부고발자의 이름에 대한 기밀을 보호한다. 이 신분은 개인 사유자료에 대한 접근, 개정, 반대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행사하려 하여도 잠재적인 보고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다쏘그룹은 업무수행강령의 위반에 관련된 진실한 정보를 선의로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그 개인에 대해 어떠한 보복도 금지한다.

다쏘시스템 주주들의 이해를 해를 입힐 의도로 이 절차가 오용된다면 남용을 한 당사자에게는 징계 및 소송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선의의 사용이라면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현행법의 위반이나 본 강령의 위반에 대한 혐의를 보고할 때, 사실관계, 날짜, 이름과 함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후 조사를 할만큼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보고되는 사실을 묘사하는 글씨체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단정적이라는 체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조사중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사를 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되거나 저장될 수도 있다.

제출된 사례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추후 조사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유의하면서 평가될 것이다.

보고서가 저장된 경우, 잠재적인 보고자는 이에 대한 사실을 전달받게 되며, 관련된 접근 또는 개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U 이외의 모든 다쏘그룹 회사들은 European Data Privacy Directive 와 관련된 Eueopean Directive 를 준수해야 하며, 따라서 Safe Harbor 를 충실히 수행하거나 회사간 이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쏘그룹의 프랑스 모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상기의 전문적인 내부고발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과 관련하여 이 강령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새로운 개정본은 전세계 모든 다쏘 직원에게 전달되어 져야 한다.